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3. 12. 22 선고 2023가단153969 판결 [임차보증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현 담당변호사 이해미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3. 11. 24.

판 결 선 고 2023. 12. 2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 4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10. 26.부터 2023. 11. 22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들은 2021. 11. 10.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D아파트 E호(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)를 임대차보증금은 410,000,000원, 임대차기간은 2021. 12. 27.부터 2023. 8. 31.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고, 계약금 390,000,000원은 위 계약 당일, 잔금 20,000,000원은 2021. 12. 27. 지급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.

나.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의 만료일 3개월 앞둔 시점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하였다.

다. 원고들은 2023. 10. 13.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, 2023. 10. 25. 퇴거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

2. 판 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,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4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거한 다음날인 2023. 10. 26.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3. 11. 22.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성호